

이름:		날짜:	
-----	--	-----	--

YM고전읽기 논술 능력고사(중고등)

[문제1]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서로 비교하라. (750자 내외)

[문제2] 제시문 (라)와 (마)를 참고하여, 제시문 (바)의 두 입장 중 하나를 골라 (바)의 밑줄 친 토론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하되, 제시문 (사)의 사례 중 적어도 두 개 이상 평가하라. (900자 내외)

(가)

이른바 '자유'의 역설이란, 통제나 제재가 전혀 없는 상태의 자유는 결국 엄청난 구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개념이다. 힘센 자가 온순한 자를 지배하고 억압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 생각은 약간 다른 형태와 전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플라톤에 의해 이미 명백히 표현된 바 있다.

그에 비해 덜 알려진 것이 바로 '관용의 역설'이다. 무제한적인 관용은 결국 관용의 소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가 불관용적인 자들에게조차 무제한의 관용을 베푼다면, 그리고 불관용 세력의 공격에 맞서 관용의 사회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관용적인 사람들은 파괴되고 관용 그 자체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관용적인 철학이나 주장의 표현을 무조건 억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논리로 그들에 맞설 수 있고 여론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동안에는, 억압이란 명백히 가장 현명하지 못한 처사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억압할 권리 또한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성적인 논증의 수준에서 우리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처음부터 모든 논증을 혈투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추종자들에게 이성적 논증이란 기만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가르치며, 논증에 맞서는 법으로 오직 '주먹'을 사용하라고 가르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관용의 이름으로, '불관용을 용인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불관용을 선동하는 모든 움직임은 법의 보호 테두리 밖에 놓여야 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살인이나 납치 선동을 범죄로 다루어야 하는 것과 정확히 마찬가지로, 혹은 노예무역의 부활을 선동하는 것을 범죄로 여겨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관용과

박해를 선동하는 행위 역시 범죄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진보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기능한다. 역사적으로 국가 권력이나 사회적 다수는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거나 기득권에 도전하는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유혹에 끊임 없이 시달려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상가들은 지식과 진실이 검열을 통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경쟁과 토론 속에서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점을 역설해 왔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철학적 토대는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의 저서 『자유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설령 어떤 주장이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거나 명백한 거짓으로 보일지라도 국가나 다수가 이를 사전에 금지하거나 강제로 침묵하게 해선 안 된다. 밀은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우리가 맞다고 생각한 것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 우리가 틀렸다고 믿는 의견 속에도 진실의 조각이 숨어있을 수 있으며, 마지막 셋째, 설령 그 주장이 완전히 그릇된 것이라 할지라도 오류와의 치열한 논쟁을 거치지 않는 진리는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력을 잃은 고집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밀의 사상적 기반 위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은 검열과 통제의 위협성을 지적한다. 표현의 자유를 어떤 명분으로든 제한하려는 시도는 결국 권력을 쥔 자들의 자의적인 검열과 정치적 억압으로 변질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사회의 안녕', '도덕성 수호', '가짜 뉴스 규제'와 같은 명목들은 그 자체로 모호하며, 시대의 권력자나 다수파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는 편리한 무기로 오용되기 십상이다.

(다)

[샌디훅 총격 음모론자 약 10억 달러 배상 판결]

극우 음모론자인 알렉스 존스 씨가 샌디훅 총기 난사와 관련한 거짓 주장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9억6천5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12일 코네티컷주 법원 배심원단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존스 씨는 텍사스주에서 진행된 별도의 민사 소송¹⁾ 재판에서 약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요. 존

1) 민사 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 및 손해 배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이란 점에서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절차인 형사 소송과 구분된다.

스 씨의 음모론에 대해 법원이 두 번째 대규모 배상 결정을 내린 겁니다.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은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12년 12월 12일입니다. 미 동부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 총격범이 들어와 학생들과 교사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는데요. 총격범은 20살 청년인 애덤 란자 씨로 자신의 어머니를 총기로 살해한 뒤 샌디훅 초등학교에 난입했습니다. 란자 씨가 학교에서 반자동소총을 난사하면서 순식간에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이 총에 맞아 숨졌고요. 총격범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존스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극우 성향의 온라인 매체 ‘인포워스’를 통해 샌디훅 총기 사건은 총기 규제를 원하는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에 의해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펼쳤습니다. 샌디훅에서 총기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언론 보도에 나온 슬픔에 잠긴 가족들은 다들 고용된 배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5명의 어린이와 3명의 교직원 유족들 그리고 현장에 출동했던 미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존스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의 일종인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2일, 배심원단이 이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라고 판결한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대규모 배상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샌디훅 총격으로 6살 난 딸을 잃은 로비 파커 씨는 “우리가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다면서 “이제 그렇게 힘들지도, 무섭지도 않을 것”이라며 울먹였습니다.

유족들은 존스 씨가 음모론을 퍼뜨려서 경제적인 이득도 챙긴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재판에서 존스 씨와 인포워스의 모회사인 ‘프리 스피치 시스템스’가 샌디훅 참사와 관련한 거짓말을 방송의 주제로 삼아 사이트 접속자를 늘리고, 관련 상품을 팔아 거액을 벌어들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조시 코스코프 변호사는 “존스 씨는 비탄에 빠진 사람들을 등에 업고 이익을 얻으려고 죽음의 그림자 속을 걸어왔다”며 “미국에서 이런 사업 행태를 지속하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스 씨는 앞서 텍사스주 민사 소송에서도 거액의 배상금을 낼 것을 명령 받았습니다. 텍사스 배심원단은 존스 씨가 샌디훅 총격으로 숨진 아이의 부모에게 4천 9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존스 씨는 또 다른 민사 소송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총격으로 숨진 또 다른 아이의 부모가 텍사스주 법원에 제기한 재판이 올해 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라)

[美까지 우려한 ‘가짜뉴스처벌법’…‘플랫폼 부담·위헌 논란’ 확산]

정부가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주요 9개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 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유통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도 부과된다. 하지만 무엇을 허위조작정보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 자율에 맡기면서 플랫폼 부담과 표현의 자유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에이엑스지(AXG),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9개 사업자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사업자로 지정했다. 법 시행과 함께 플랫폼들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책임도 떠안게 됐다. 정부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혼선과 법적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의 판단 기준은 사업자가 정하도록 돼 있다”며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에 따른 판단을 강조했다. 정부가 세부 기준을 제시할 경우 과도한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허위조작정보 판단 책임이 플랫폼으로 넘어오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 초기인 만큼 판단이 모호한 '회색지대' 사례를 둘러싼 혼선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플랫폼이 직접 판단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판단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하고 요건을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기업은 법원이 아닌 만큼 그 판단까지 맡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위헌 논란도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인 공원준 변호사는 공 변호사는 “차별을 비롯해 조항에 사용된 개념들의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자의적인 법 적용이 가능해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마)

광주제일고 “참담”…덩실덩실 “스벅 가야지” 응원가 배재고 향의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제일고 선수들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응원가를 부르고 “탱크데이”를 외친 것을 두고 광주제일고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제출한다. 광주제일고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모든 대회에서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일체의 응원이나 표현을 금지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구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배재고와 광주제일고가 맞붙었다. 8회 초 경기가 진행될 때 배재고 선수들은 더그아웃에서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가를 반복적으로 불렀다. 일부 배재고 선수는 “탱크데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그러자 광주제일고 코치진은 “적당히 해, 이 xx들아! 스타벅스를 왜 가!”, “스타벅스를 왜 가는데? 아까부터 계속 참고 있어”라고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고 그제야 해당 응원은 중단됐다.

논란이 되자 배재고는 같은 날 누리집에 사과문을 올렸다. 배재고는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광주제일고 선수단과 학부모님, 동문, 광주 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깊은 상처와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했다. 이어 “해당 학생 선수를 즉시 제지했다”며 선수 한명의 일탈인 것처럼 사과문을 작성해 논란을 빚었다. 경기 영상에는 여러 선수가 ‘스타벅스’ 응원가를 함께 부르는 게 담겨 있다.

광주제일고는 이번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규연 광주제일고 교장은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한다. 이 교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아직도 그로 인한 분노가 채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경기를 치르는 학생 선수들의 입을 통해 부적절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정정당당하게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의 장인 이곳 고교야구 경기장에서 혐오와 조롱의 언어가 여럿의 목소리로, 큰 소리로 울려 퍼진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는 경기 전, 경기 중, 경기 후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일체의 응원이나 표현을 금지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교장은 “선수들과 지도자는 물론 학부모, 관중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늘 교육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러한 내용을 위반한 선수와 지도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바)

다음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개정, 표현의 자유 억압인가, 민주사회의 보호막인가”라는 제목의 가상토론의 한 대목이다.

패널A: “최근 시행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한 규제입니다. 법의 목적이 아무리 허위 정보 차단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국가 권력이 재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검열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때로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지라도 그 자체로 치

열한 공론장의 자정 작용을 믿고 보장해야 하는 절대적인 기본권입니다. 모호한 잣대로 언론을 봉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행시키는 길입니다.”

패널B: “표현의 자유가 소중하다고 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흉기 같은 가짜뉴스까지 방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방임에 불과합니다. 최근 배재고등학교 사안 등에서 볼 수 있듯, 악의적인 혐오 표현과 무분별한 허위 조작 정보는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고 혐오를 확산시키며 공론장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처벌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실수를 하거나 의견이 다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성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 유포하는 '고의성'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따라서 단순한 오보나 사소한 실수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패널A: “고의성을 입증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는 그럴듯하지만, 현실의 법 집행 과정에서 그 경계는 너무나 흐릿합니다. 유해한 정보가 문제라면 시민사회의 비판 기능과 팩트체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정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순리입니다. 국가가 형벌과 법적 제재의 칼날을 들이밀어 정보의 유통을 통제하려 드는 순간, 시민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잃고 국가가 허락한 진실만을 소비하게 됩니다. 사회적 해악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가에 통제의 권력을 쥐어주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더 큰 손해 행위입니다.”

패널B: “시민사회의 자율적 정화 기능에만 기댈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한계입니다. 알고리즘은 혐오와 가짜뉴스를 가장 빠르게 확산시키며, 이미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회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무책임한 폭력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

(사-1) 2021년 2월, 독일 라디오 방송국 'BAYERN 3'의 진행자 마티아스 마티슈케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콜드플레이 커버 곡을 생방송으로 소개하던 중 이들을 코로나바이러스에 비유하며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 그는 BTS를 "휴가 차 한국으로 20년 동안 보내버려야 할 북한의 최악의 바이러스"라고 조롱하고, 이들이 외국어 곡을 커버한 것을 두고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방송사와 진행자는 공식 사과했다.

(사-2) 스페인의 프랑코 독재 정권(1939~1975년)은 집권 기간 동안 언론, 출판, 방송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열 제도를 운용하며 반정부적 표현을 엄격히 통제했다. 정권은 국가 보안법과 공공질서법을 활용해 정권을 비판하거나 바스크어 등 지역 소수 언어의 공적 사용을 금지했으며, 반체제 인사이거나 검열을 위반한 언론인은 투옥되거나 추방당했다. 이 시기 스페인 내에서 민주주의, 인권, 정치적 다원성을 옹호하는 일체의 표현은 범죄로 처벌받았다.

(사-3) 일본의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은 2013년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해 "전쟁 상태에서 (위안부가) 필요했다는 것은 누구라도 잘 아는 사실"이라며 "적법하게 관리된 측면이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미군 지휘관을 만나 일본 주둔 미군들에게 오키나와 유흥가 비즈니스를 적극 활용해 성적 욕구를 풀도록 권장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 정당화 및 여성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며 국내외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사-4) 독일 형법 제86조 및 제86조 a항은 헌법재판소나 국가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 단체의 상징물, 구호, 경례 등을 대중적으로 배포, 사용, 전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히틀러 찬양, 나치 문양 사용, '하일 히틀러' 같은 나치 구호 제창 등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다. 실제 2017년 독일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나치 경례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사법 처리를 받았다.

(사-5) 198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대 존슨' 판결에서 미국 국기를 불태운 행위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그레고리 리 존슨은 공화당 전당대회 개최 장소 앞에서 레이건 행정부 정책에 항의하며 성조기를 불태워 주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비록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가 불쾌감을 줄지라도 정치적 항의를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끝)